

# 국립광주박물관 대관규정

재정 1998. 05  
재정 2007. 01  
재정 2011. 09  
재정 2011. 11  
재정 2016. 01

## 제1조 (목 적)

이 규정은 국립광주박물관(이하“박물관”이라한다)의 시설을 전통문화에 관한 교육과 보급·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행사에 사용할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통 문화예술의 진흥·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범위)

① 대관을 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은 다음과 같다.

1. 대강당
2. 시청각실
3. 세미나실
4. 전시관 1층 중앙 홀
5. 기타 부대시설

② 전시관 1층 중앙홀은 제9조(무료대관)의 행사에 한한다.

## 제3조 (대 관)

국립광주박물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

1. 전통문화의 보존, 보급,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
2.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, 공연 등 행사
3.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
4. 문화가족 관련 행사
5. 기타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
#### 제4조 (대관 신청)

① 박물관 시설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에 행사 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사일 10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다만,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1. 대관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, 성명)
2. 행사의 명칭, 종류 및 내용
3. 대관기관 및 장소
4. 참가 예정인원
5. 행사물품, 집기들의 반입, 설치 및 철거일
6.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(전시에 한한다.)

② 관장은 제 1항의 개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④ 박물관 시설의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대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⑤ 소장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관 승인사항 변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변경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(별지 제4호 서식)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5조 (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)

① 대관신청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대관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관장, 기획운영과장, 학예연구실장, 학예연구관1인 총 4명으로 하고 간사는 국유재산 담당 1인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6조 (대관의 우선순위)

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박물관의 업무, 행사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.

### 제7조 (대관의 금지)
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자
2.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
3. 대관신청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

### 제8조 (대관료)

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자는 대관일 5일전 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다만,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관장이 후불을 승인한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과 동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관장이 정한다.

③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대관받은 자가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### 제9조 (무료대관)

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.

1.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
2. 국립박물관 및 국·공립대학박물관이 주관하는 행사
3. 박물관 공동으로 실애하는 행사(미수익성 행사에 한한다.)
4. 관장이 박물관의 사업목적에 부합한 활동으로 박물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

### 제10조 (대관기간 및 대관장소의 변경)

관장은 박물관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과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.

### 제11조 (대관의 취소)

관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
2.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
3.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
4.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및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

### 제12조 (대관자 준수사항)

대관자가 준수할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제13조 (손해배상)

시설을 대관받은 자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.

### 제14조 (대관시간)

대관시간은 박물관 개관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.